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7.부터 2022.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사 홍주현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D 호 소재에서 거주 중인 사람으로, 경기 파주시 E 소재에서 주식회사 B (이하 피고회사라고 합니다.)라는 상호로 부동산분양업 등을 하는 피고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2. 확약서의 작성 등

가. 원고는 피고회사와 인천광역시 서구 F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2층 상가부동산 중 29개호에 관하여 2021. 12. 11. 매매계약을 작성하기 앞서 계약금을 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그 사유는 매매계약서의 추가검토로 인한 계약일 변경으로 정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원고의 요청으로 계약의 진행이 중단될 경우, 7일 이내 위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단서를 명시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위 확약서에 따라, 피고회사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2. 11.에 40,000,000원, 2021. 12. 13.에 10,000,000원과 5,000,000원 등 총 55,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의 취소 등

원고의 위 부동산의 매수검토 결과, 매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산매매컨설팅업자인 소외 G H 이사를 통하여 피고회사에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보하고, 피고회사에게 2022. 1. 19. 직접 문자메시지로 위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 55,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2022. 1. 21.에 계약금을 2022. 1. 26.까지 반환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금반환 요청서를 피고회사에 발송하였고, 2022. 1. 24.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I 의 회사동료가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4. 계약금의 미지급

피고회사는 원고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계약금 5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한 날짜 2022. 1. 26.의 다음날인 2022. 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